

## 대한중국학회 <공자학술상>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중국학 연구와 발전에 공헌이 있는 학자를 장려하고, 그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한중국학회 공자학술상'을 제정, 시행한다.

### 제2조 (명칭)

학술상의 명칭은 '대한중국학회 공자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

### 제3조 (심사대상)

1. 시상년도 기준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국내 중국학 관련 학회와 기관에서 게재된 문학·사학·철학·어학 전공 분야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국내 중국학 관련 학회와 기관의 학회장,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타 학회와 기관의 추천논문은 각 1편으로 한정한다.
4. 본 학회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5. 공자학술상 기수상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 (심사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1. 학술상의 심사와 선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이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회원 중에서 1인을 추천한다.
3.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현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심사위원회에는 사무국장을 회무위원으로 한다.
5. 심사위원회에는 2차 예비심사위원회와 3차 본심사위원회로 구성한다.
6. 2차 예비심사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3명의 학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7. 3차 본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심사위원 4인, 총 5인 홀수로 구성한다.
8. 심사위원을 2차 예비심사와 3차 본심사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9. 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10.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3차 본심사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심사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11. 선정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최종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수상자를 확정하여 공개한다.
12. 학술상 수상자를 공개하기 전까지 심사위원의 명단은 밝히지 않는다.

### 제5조 (심사)

1.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위해 학술상 운영세칙을 둔다.
2. 논문의 추천인과 심사대상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3. 심사대상자의 특수관계인, 이해상충, 석·박사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 **제6조 (보고 및 시상)**

1. 학술상의 시상은 심사과정, 평가내용 및 최종선정결과에 대해 추계 이사회에 보고하고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선정된 논문 1편에 상장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한다.
3. 수상자는 대한중국학회 추계학술대회 시상식 참여와 기조강연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4. 추천된 논문이 전체적으로 충분한 학술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 (학술상의 제정과 폐지)**

상의 제정, 개정, 폐지는 대한중국학회 이사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기타)**

1. 심사위원회 구성 이전, 규정과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하면 학회 이사회에서 협의한다.
2. 심사위원회 구성 이후, 규정과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하면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대한중국학회 <공자학술상> 운영세칙

1. 1차 검증, 2차 예비심사, 3차 본심사로 진행한다.
2. 1차 심사는 사무국에서 심사대상 논문의 표절 여부를 확인한다.
3. 2차 예비심사위원회 위원은 전공분야에서 일정한 학술적 성과를 이룬 학회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4. 3차 본심사위원회 위원은 타 학회나 기관의 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수석총무이사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분 중에서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5. 2차 예비심사는 전공 분야별 심사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진행한다.
6. 전공 분야별 심사대상 논문이 많더라도 평가 기준의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한정된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7. 심사항목은 '① 연구내용의 독창성', '②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로 구성한다.
8. 심사배점은 항목에 따라 탁월(10점), 우수(8점), 양호(6점), 보통(4점), 평가보류로 평가한다.
9. 전공 분야별 심사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2개 평가 항목에서 평균 14점 미만을 얻은 논문은 자동 탈락한다.
10. 전공 분야별 10편 이상 접수된 논문에서는 3편, 5~9편은 2편, 4편 이하의 경우에는 1편의 논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2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편수가 많을 경우, 최고점수를 얻은 순서대로 최종 5편을 선정하여 3차 본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선정된 마지막 논문이 복수일 경우에는 예비심사 통과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3차 본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중국학 관련 5인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5인은 예비심사를 통과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14. 3차 본심사의 심사항목과 배점은 2차 예비심사와 동일하다.
15. 본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항목 2개에서 평균 20점 미만을 얻은 논문은 자동 탈락한다.
16. 최고점수를 얻은 순서대로 두 편의 논문을 선정한다. 두 번째 논문이 복수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17. 최종 토론을 통하여 학술상 수상논문을 결정하여 학술상 선정위원회에 최종 보고한다.
18. 2차 예비심사의 심사비는 편당 3만 원으로 한다.
19. 3차 본심사의 심사비는 20만 원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장의 회의 진행비 및 심사비는 30만 원으로 한다.